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 - 21호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지역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회 등을 설치하여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민관협력을 촉진하며, 이를 위한 조직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개최, 안건의 제출, 안건의 배부,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안 제12조)
- 인천광역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사무국 설치, 구성, 인력과 조직, 담당 업무, 예산, 결산, 공무원 등의 파견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18조)
- 협의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와 시행규칙 설치 규정(안 제19조~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 4. 2(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440-6232,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붙임자료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지역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민관협력을 촉진하며 인천지역 창조경제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창조경제 관련 민간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협력창구로 시에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1. 인천지역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인천지역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유관기관·단체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창조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5.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혁신센터”라 한다) 운영 주요사항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천 창조경제 실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 수행하며, 부위원

장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지역 대기업과 창업관련 기관·단체의 대표(부대표)

-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경제단체, 출연기관, 연구소, 관내 대학, 소상공인 지원기관·단체, 창업자금 대출기관 등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창조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창조경제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에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협의안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창조경제 관련기관·단체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단체 등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나 세미나 개최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3조(혁신센터 설치 및 구성) ① 인천창조경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혁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혁신센터 내에 사무국을 두되, 제물포스마트타운(Jemulpo Smart Town, 이하 “JST”라 한다) 일자리지원본부에서 수행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JST 일자리지원본부장이 겸임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사무국 인력과 조직) ① 사무국의 인력은 15명 내외로 하며, JST 일자리지원본부 그리고 협의회 참여기관·단체의 파견인력으로 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은 3~4개 팀으로 운영한다.

③ 사무국 운영 인력과 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5조(담당업무)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천지역 창조경제 추진전략 수립·시행
2. 창업 활성화의 벤처·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개선
3. 창조경제 문화의 확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기획·추진
4. 아이디어 사업화 관련 민간프로그램의 연계 등 인천창조혁신센터의 운영 지원
5. 창업촉진프로그램 운영(창업교육, 창업경진대회, 창업포럼, 창업 후 사후관리 등)
6. 창의적 아이디어 구체화, 멘토링·경영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창업촉진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예산 등) ① 사무국은 매 회계연도 마다 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사무국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지원금
2. 시 보조금
3. 기타 수입금

제17조(결산) ① 사무국은 매 회계연도의 정산보고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서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② 사무국은 수입·지출결의서 및 제1항에서 규정한 관계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 시장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해당없음”
관련조례 정비대상	“해당없음”
관련자료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지역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창조경제협의회와 사무국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은 없음

4. 작 성 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허인환 의원